

# 10. 所得稅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5-100號 1995. 12. 13

## 1. 개정취지

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,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30%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(주식은 제외)으로 정하고,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 등을 정함.
- 나. 30%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저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

정함.

- (1) 은행(신탁계정은 제외)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,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부금과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단위 농·수·축협이 취급하는 적금으로서 5년 내에는 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저축으로 함.
- (2) 최초 저축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저축기간을 연장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함.
- (3) 분리과세 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15%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고 종합과세를 받도록 함.
- 다.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5년 미만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에 대하여는 보험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로

하고, 보장성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공제료 불입액을 연 5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.

라.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아파트입주  
지체보상금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 
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액  
의 75%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  
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.

마.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
비과세요건을 3년 이상 거주 또는  
5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 
로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함.

바.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 
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  
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  
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 
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  
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주  
택으로서의 거주이전 요건은 삭제함  
으로써 거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.

사.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  
고 당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  
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 
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 
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  
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
아. 토지 등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이나 경매가액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함.

자.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  
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  
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  
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  
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  
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 
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 
함.

차. 부동산 양도 등기전 신고에서 제외  
하는 대상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 
이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하고  
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  
무서장은 신고확인서를 즉시 교부하  
도록 하는등 부동산 양도 등기전 신  
고제도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방법  
등을 규정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 종)를 재

정경제원장관(참조: 소득세제과장)에게  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

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
명), 주소

**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**